

 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 대한민국 대원환 한국판뉴딜	
	 금융감독원	보도	`21.6.25일(금) 석간		배포

기관명	책 임 자		담 당 자
금융위원회	은행과장	김연준 (02-2100-2950)	윤동욱 사무관 (02-2100-2951)
	금융정책과장	이동훈 (02-2100-2830)	김수빈 사무관 (02-2100-2833)
금융감독원	은행감독국장	이준수 (02-3145-8020)	노영후 팀 장 (02-3145-8050)
	은행리스크업무실장	박상원 (02-3145-8350)	김범준 팀 장 (02-3145-8356)
	거시건전성감독국장	김준환 (02-3145-8170)	황태식 부국장 (02-3145-8185)
	금융그룹감독실장	최인호 (02-3145-8200)	김택주 팀 장 (02-3145-8210)

제 목 : 「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 관리 권고」가 `21년 6월말 종료됩니다.

1. 자본관리 권고 종료

□ 금융위원회는 '21.6.24일 정례회의에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*를 예정대로 6월말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.

⇒ 동 권고에 따른 행정지도도 6월말 종료됩니다.

※ 「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」(21.1.27일 금융위 의결)

- (내용) 배당(중간배당, 자사주매입 포함)은 원칙적으로 순이익의 20% 내 실시
 - 다만,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기준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실시하되,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 결정
- (대상)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
 - 국내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은 제외되며,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금융기관(산은, 기은, 수은)도 권고 대상에서 제외됨
- (적용기한) '21.6월말까지

□ 금융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관리 권고를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.

① 주요 기관에서 우리나라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등 자본관리 권고 실시 당시에 비해 실물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.

< 주요 기관의 `21년 경제전망(GDP성장률) 수정 현황 >

구 분	한국 경제		세계 경제	
	기존 전망	신규 전망	기존 전망	신규 전망
한국은행	3.0% (2월)	4.0% (5월)	4.8% (2월)	5.8% (5월)
IMF	3.1% (1월)	3.6% (4월)	5.2% (1월)	6.0% (4월)
OECD	3.3% (3월)	3.8% (5월)	5.6% (3월)	5.8% (5월)

②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는 코로나19 이후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

<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금 현황 >

(단위 : 조원)

구 분	`19년말	`20년말	`21.1분기말
원화대출금	1,697	1,895	1,939
연중 대출 증가액	99	198	44
연중 기업대출 증가액	49	114	24

- 대손충당금 추가적립, 배당축소 등을 통해 BIS 총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손실흡수능력도 제고되었습니다.

< 국내 은행(지주)의 자본비율 및 대손충당금 현황 >

(단위 : %)

구 분	`19년말	`20년말	`21.1분기말
BIS 총자본비율	13.91	15.00	15.36
대손충당금 적립률(은행)	112.1	138.8	137.3

③ 모든 은행과 은행지주가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(`21.5~6월)를 통과하였습니다. (☞ 상세 내용 참고1)

< 은행 및 은행지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>

(단위 : %)

구 분	'20.12말	악화 시나리오		심각 시나리오		배당제한 규제비율 (D-SIB*기준**)
		'21.12말	'22.12말	'21.12말	'22.12말	
보통주자본비율	12.7	12.4	12.1	12.2	11.4	8.0
기본자본비율	13.8	13.4	13.1	13.3	12.4	9.5
총자본비율	15.3	15.0	14.7	14.8	13.9	11.5

* D-SIB(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) : 5개 금융지주 및 산하 은행(신한, 하나, KB, 우리, 농협)

** D-SIB이 아닌 은행의 경우 각각 7.0%, 8.5%, 10.5%

※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 (금융감독원에서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설정, '21.4월말 기준)

구 분 (단위 : %)	'21년 성장률			'22년 성장률		
	기본 (Baseline)	악화 (adverse)	심각 (severe)	기본 (Baseline)	악화 (adverse)	심각 (severe)
GDP 성장률	3.5	1.3	0.0	2.5	2.2	1.5

* 지난 1월 스트레스테스트시에는 '21년 성장률을 $\Delta 5.8\%$, '22년 성장률을 0.0%로 가정 (L자형 시나리오 기준)

4 미국·유럽 등 주요국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경제상황 호전 등을 근거로 배당제한 완화 계획*을 발표하였습니다. (☞ 상세 내용 참고 2)

* (미국) '21.6월말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충족시 배당제한 해제 예정
(유럽) 경제상황의 심각한 악화가 없는 한 '21.9월말 배당제한 해제 예정
(영국) '21년말 배당제한 해제 예정

2. 금융위원회 의견

□ 금융위원회는 금년의 경우 은행과 은행지주가 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,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*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.

※ 예: 코로나19 확산 이전 평년 수준의 배당성향을 참고

- 금융위원회 위원들은 은행과 은행지주는 주주가치 제고뿐만 아니라,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충분한 자본확충 필요성이라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배당 수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였습니다.
- 최근 은행과 은행지주의 배당 문제와 관련하여 업계에서는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으나,
-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·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(~'21.9월말)와 실물부문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유연화 조치(~'21.12월말)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.

3. 향후 계획

- 7.1일부터 은행과 은행지주는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,
 - 실물경제 개선 추이, 금융시장의 안정성,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,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.

[참고1] 은행 및 은행지주 대상 스트레스테스트 결과

[참고2] 주요국의 은행 배당 규제 및 완화 동향

[참고3] 관련 Q&A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 pfsc@korea.kr



참고 1

은행 및 은행지주 대상 스트레스테스트 결과

□ (테스트 개요) 금융감독원은 은행지주회사*(8개사) 및 국내 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은행**(8개사) 등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('21.5~6.)

* 신한, KB, 하나, 우리, NH, BNK, DGB, JB

** SC, 씨티, 산업, 기업, 수출입, 수협, 케이뱅크, 카카오뱅크

○ 금융감독원은 이번 스트레스테스트를 위해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최근 개선된 경제전망(2p 참고) 등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마련

<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(GDP성장률) >

구분	지난 1월 스트레스테스트		이번 6월 스트레스테스트*	
	U자형 (장기회복)	L자형 (장기침체)	악화 (Adverse)	심각 (Severe)
'21년	△5.8	△5.8	1.3	0.0
'22년	4.6	0.0	2.2	1.5

* 발생 가능한 미래 성장률 분포 중 하위 5% 수준을 '악화', 하위 1% 수준을 '심각'으로 설정

○ 스트레스테스트의 일관성을 위해 지난 1월과 동일한 모형*으로 '21~'22년의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비율의 변화를 추정

* STARS(Stress Test for Assessing Resilience and Stability of Financial system)

○ 기준일('20.12월말) 이후 증자(예정)액 등 자본 확충 내역 등을 반영
· 조정하여 결과를 확정

➔ (테스트 결과) 모든 시나리오(악화·심각)에서 쏘 은행 및 은행지주가 배당제한 기준 규제비율*을 상회

* 규제비율 : 보통주 7% (8%), 기본 8.5% (9.5%), 총자본 10.5% (11.5%) / ()는 D-SIB

※ 1월 스트레스테스트에서는 L자형 시나리오(장기침체)에서 상당수 은행 및 은행지주가 규제비율을 미충족

< 은행 및 은행지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>

(단위: %)

구분	'20.12말	악화 시나리오		심각 시나리오		배당제한 규제비율 (D-SIB기준)
		'21.12말	'22.12말	'21.12말	'22.12말	
보통주자본비율	12.7	12.4	12.1	12.2	11.4	8.0
기본자본비율	13.8	13.4	13.1	13.3	12.4	9.5
총자본비율	15.3	15.0	14.7	14.8	13.9	11.5

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(Federal Reserve Board)

- (제한) '20.6월,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 주요 은행*의 배당을 제한**하고 자사주 매입을 금지
 - * 도드-프랭크법에 따라 스트레스테스트가 실시되는 34개 은행
 - ** 주요 은행은 보통주 배당을 '20년 2분기 대비 늘리지 않고, 보통주 배당을 직전 4분기 평균 당기순이익 이하로 유지하는 선에서 보통주 배당을 실시할 수 있음
- (완화) '20.12월 발표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'21년부터 제한적으로 허가*했으며,
 - * 주요 은행은 보통주 배당을 '20년 2분기 대비 늘리지 않고, 보통주 배당과 자사주 매입의 합이 직전 4분기 평균 당기순이익 이하로 유지하는 선에서 자본배당을 실시할 수 있음
 - 6.24일, 연준은 23개 대형은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발표하고 배당·자사주매입 제한 조치를 해제

② 유럽중앙은행(European Central Bank)

- (제한) '20.3월, 감독대상 주요 은행(significant supervised entities/groups)에게 '19~'20년분 자본배당을 실시하지 않도록 권고
- (완화) '20.12월, '19~'20년 누적 당기순이익의 15% 이하 및 보통주자본비율의 0.2%p 이하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자본배당을 실시하도록 허가하고,
 - 배당제한 조치는 경제상황이 심각히 악화되지 않는 한, 9월말까지만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(7.23일 배당·자사주매입 제한 조치 해제 여부 판단 예정)

③ 영국 건전성감독기구(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)

- (제한) '20.3월 6개 주요은행*에게 자본배당을 '20년말까지 중지하고 '19년분 배당 지급 취소를 요청
 - * Barclays, HSBC, Lloyds Banking Group, NatWest, Santander UK, Standard Chartered
- (완화) '20.12월 주요 은행이 '20년분 자본배당을 제한적으로 실시*할 수 있도록 완화된 자본배당 규제를 발표하고,
 - * '20년분 자본배당 금액이 $\max\{\text{'20년말 위험가중자산의 0.2\%, '19~'20년 누적 순이익의 25\%에서 동기간 자본배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}\}$ 이하로 결정되어야 함
 - '21년말 이후에는 배당제한을 중단할 계획임을 밝힘

1. 하반기 중 은행(지주)의 중간·분기배당이 가능해진 것인지?

- 금융위원회의 자본관리 권고(1.27일 의결) 종료에 따라, 7월 1일 이후 은행(지주)은 자율적으로 배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, 은행(지주)이 관계 법령*에 따라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을 실시하려는 경우, 정관에 이를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.

* (분기배당) 3·6·9월 말 기준 주주에 배당 가능 (「자본시장법」 §165의12)
 (중간배당)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배당 가능 (「상법」 §462조의3)

< 주요 은행지주의 중간·분기배당 관련 정관 내용 >

구 분	유 형	정 관 내 용
신한·KB	분기배당	3·6·9월말 기준 45일 이내 이사회 결의로 실시
하나	중간배당	6월말 기준 45일 이내 이사회 결의로 실시
우리·NH		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 실시

2. 금융위원회 의견은 새로운 배당 제한 아닌지?

- 이번 금융위원회 의견은 새로운 배당제한이 아닙니다.
- 지난 1.27일 발표한 자본관리 권고(행정지도)는 6월말로 종료되었으며, 앞으로 은행(지주)은 자율적으로 배당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금융위원회가 6.24일 회의에서 지적한 내용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, 배당 수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금융위원회 차원의 “의견 표명”입니다.
- 따라서, 은행(지주)이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

3. “코로나19 확산 이전 평년 수준의 배당성향을 참고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?

-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한 것입니다.
- 예를 들어, 은행(지주)은 중간 또는 분기배당 수준 등을 결정할 때,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의 배당성향 수준* 등을 참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.

* 은행권 평균 배당성향(%) : ('16.) 23.8 → ('17.) 23.9 → ('18.) 22.7 → ('19.) 26.2 → ('20.) 20.4

4. 배당은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, 금융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지?

- 평상시에 은행(지주)의 배당은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.
- 다만,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손실흡수능력 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,
 - 6.24일 금융위원회에서는 금년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, 은행(지주)이 배당을 하더라도 배당 수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입니다.

5. 금융위원회 의견은 금년에 국한된 것인지?

- 6.24일 금융위원회 의견은 금년 중 이루어지는 배당(중간·분기 배당)에 대한 것입니다.

※ 은행(지주)은 기본적으로 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